

# 행정자치부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소방헬기 장비 수리 등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관 련 자 강원도 소방본부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01.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강원도 소방본부 ○○○○○에서 근무하면서 소방헬기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사건개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2015.8.2. 소방헬기 2호기가 ○○산 산악구조 임무 중 호이스트<sup>116)</sup> 부분의 고장이 발생하자 관련 부품 구매 및 고장수리를 추진하였다.

헬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sup>117)</sup> 제35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검사는 일일검사, 정기검사, 감항검사, 특별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호에 따르면 일일검사, 정기검사, 감항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관리 중 발생한 결함은 제작사의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116) 헬기 구조시 헬기에서 로프 등을 이용 부상자 등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로서 어셈블리(모터 및 케이블 드럼으로 구성) 및 컨트롤 박스로 구성

117)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 1. 6.)

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헬기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제작사의 정비 교범 및 제작사와 기술회보 등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으로 수리할 부분 및 부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수리절차 미준수로 예산 낭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헬기 호이스트 고장이 발생하자 제작사의 정비 교범 및 기술회보 등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는 수리 진단을, 자체적으로 진단하여 컨트롤 박스 이상으로 판정하였고

2015. 8. 14. (주)○○○○○○○사를 통하여 컨트롤박스(65,675천원)를 납품 받고 교체·수리하였으나 호이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다시 모터 고장으로 2차 판단하여 어셈블리 일체 부품(모터 및 케이블 드럼으로 구성)을 2억3천7백만원에 신규 구입 후 모터(19,000천원)만 분리 교체하였다.

그 결과, 호이스트 수리에 한 달 이상(2015. 8. 2.~2015. 9. 7.)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최초 고장 시 외주업체와 기술회보 등을 통해 정확한 고장진단을 하였더라면 모터 교체만으로 가능했던 정비를, 컨트롤 박스를 새로 구입하여 65,675천원을 예산 낭비를 하였고

또한, 어셈블리 일체(237,390천원)를 새로 구입<sup>118)</sup>하여 모터(40,000천원)만 사용함으로써 197,390천원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예비비 성립·지출 과정 및 계약 전 장비 선 구입 등 절차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고

---

118) 케이블 드럼 및 기존 모터는 수리하여 예비부품으로 관리 중임

규정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강원도 재무회계규칙<sup>119)</sup>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기준」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 세출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 지출 예비비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 소방본수(○○○○○)에서는 호이스트 모터 교체를 위해 내부결재를 통해 예비비 집행 신청 이전에 부품을 선주문 방침을 결정하였고

그 결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국내 AW000 헬기 대행사인 (주)○○○○○○○○를 통하여 제조사 이탈리아 ○○○○사에 호이스트 어셈블리 일체<sup>120)</sup>(모터포함)를 우선 납품 받아 수리를 하는 등 소방헬기의 부품 구입 및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헬기 수리 시 고장 부분을 잘못 진단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와,

<sup>119)</sup>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2015.1.22.)

<sup>120)</sup> 모터만 구입하여야 하나, 모터만 따로 구입할 경우 납품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이탈리아 ○○○○사의 답변으로 어셈블리 일체를 구입함

예비비 성립 이전에 제품을 선 주문하여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